

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중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8400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8. 4.

발의자 : 김중로 · 황주홍 · 정동영

장정숙 · 김삼화 · 김종회

최도자 · 박준영 · 정인화

조배숙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사업지구란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되는 지구, 즉 지적재조사사업이 시행되는 사업지구를 의미함.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구체적인 ‘지적재조사지구’의 명칭이 아닌 단순한 ‘사업지구’의 명칭으로 규정함으로써 타법의 사업지구와 혼돈할 가능성이 있으며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 현행법상 ‘사업지구’를 ‘지적재조사지구’로 개정함으로써 혼돈을 방지하고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(안 제2조제3호 등).

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사업지구”를 “지적재조사지구”로 한다.

법률 제14800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의2제1항제1호 중 “사업지구”를 “지적재조사지구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“사업지구”를 각각 “지적재조사지구”로 한다.

제7조의 제목, 같은 조 제1항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“사업지구”를 각각 “지적재조사지구”로 한다.

제8조의 제목,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“사업지구”를 각각 “지적재조사지구”로 한다.

제9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“사업지구”를 각각 “지적재조사지구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사업지구”를 각각 “지적재조사지구”로 한다.

법률 제14800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사업지구”를 각각 “지적재조사지구”로 한다.

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“사업지구”를 각각 “지적재조

사지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“우선사업지구”를 “우선지적
재조사지구”로 한다.

법률 제14800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21조제8항
중 “사업지구”를 “지적재조사지구”로 한다.

제23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사업지구”를 각각 “지적재조사지구”로 한
다.

제29조제2항제2호 중 “지적재조사사업지구”를 “지적재조사지구”로 한
다.

제30조제5항제2호 중 “사업지구”를 “지적재조사지구”로 한다.

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,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“사업
지구”를 각각 “지적재조사지구”로 한다.

제36조 전단 중 “사업지구”를 “지적재조사지구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업지구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
라 사업지구로 지정된 것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
규정에 따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
1. · 2. (생 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
3. “ <u>사업지구</u> ”란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·고시된 지구를 말한다.	3. -- <u>지적재조사지구</u> ----- ----- -----.
4. · 5. (생 략)	4. · 5. (현행과 같음)
법률 제14800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	법률 제14800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
제4조의2(시·도종합계획의 수립) ① 시·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종합계획(이하 “시·도종합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	제4조의2(시·도종합계획의 수립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<u>사업지구</u> 지정의 세부기준	1. <u>지적재조사지구</u> ----- ----
2. ~ 7. (생 략)	2. ~ 7. (현행과 같음)
② ~ ⑨ (생 략)	② ~ ⑨ (현행과 같음)
제6조(실시계획의 수립) ① 지적 소관청은 시·도종합계획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	제6조(실시계획의 수립) ① ----- ----- -----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적소관청은 사업지구에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(이하 “토지소유자협의회”라 한다)가 구성되어 있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는 지구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사업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.

④ 지적소관청은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실시계획 수립 내용을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실시계획을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야 한다.

⑤ 사업지구에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제4항에 따른 공람기간 안에 지적소관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, 지적소관청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.

⑥ 시·도지사는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9조에 따른

④ 지적재조사지
국

⑤ 지적재조사지구

⑥ ----- 지적재조사지
구-----

<p>시·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</p> <p>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<u>사업지구</u>를 변경할 때에도 적용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제외한다.</p> <p>⑧ (생략)</p> <p>제8조(<u>사업지구</u> 지정고시) ① 시·도지사는 <u>사업지구</u>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시·도 공보에 고시하고 그 지정내용 또는 변경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② <u>사업지구</u>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고시가 있을 때에는 지적공부에 <u>사업지구</u>로 지정된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.</p>	<p>-----. -----. ⑦ ----- ----<u>지적재조사지구</u>----- -----. -----. -----. -----. ⑧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8조(<u>지적재조사지구</u> 지정고시) ① -----<u>지적재조사지구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② <u>지적재조사지구</u>----- ----- -----<u>지적재조사지구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제9조(<u>사업지구</u> 지정의 효력상실 등) ① ----- -----<u>지적재조사지구</u>----- ----- -----.</p>
---	--

적재조사측량”이라 한다)을 시행하여야 한다.	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<u>지적재조사지구</u></p> <p>-----</p>
② 제1항의 기간 내에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시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로 <u>사업지구</u> 의 지정은 효력이 상실된다.	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<u>지적재조사지구</u></p> <p>-----</p>
③ 시·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<u>사업지구</u>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이를 시·도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	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제10조(토지현황조사) ① 지적소관청은 제8조에 따른 <u>사업지구</u> 지정고시가 있으면 그 <u>사업지구</u> 의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현황조사를 하여야 하며, 토지현황조사는 지적재조사측량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.	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<u>지적재조사지구</u></p> <p>-----</p>
② · ③ (생략)	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법률 제14800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	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제12조(경계복원측량 및 지적공부정리의 정지) ① 제8조에 따른 <u>사업지구</u> 지정고시가 있으	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
면 해당 <u>사업지구</u> 내의 토지에 대해서는 제23조에 따른 사업 완료 공고 전까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.	----- <u>지적재조사지구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.
1. ~ 2. (생 략)	1. ~ 2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13조(토지소유자협의회) ① <u>사업지구</u> 의 토지소유자는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과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.	제13조(토지소유자협의회) ① <u>지적재조사지구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토지소유자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위원은 그 <u>사업지구</u> 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이어야 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	②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<u>지적재조사지구</u> ----- ----- -----.
③ 토지소유자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③ ----- -----.
1. 지적소관청에 대한 <u>우선사업지구</u> 의 신청 2. ~ 6. (생 략)	1. ----- <u>우선지적재조사지구</u> ----- 2. ~ 6. (현행과 같음)

<p>토지소유자의 수가 <u>사업지구</u> 전체 토지소유자 수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완료 공고를 할 수 있다.</p>	<p>-----<u>지적 재조사지구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9조(시·도 지적재조사위원회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① (생 략)② 시·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	<p>제29조(시·도 지적재조사위원회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① (현행과 같음)② ----- -----.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. · 1의2. (생 략)2. <u>지적재조사사업지구</u>의 지정 및 변경3. · 4. (생 략)③ ~ ⑧ (생 략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. · 1의2. (현행과 같음)2. <u>지적재조사지구</u>----- ---3. · 4. (현행과 같음)③ ~ ⑧ (현행과 같음)
<p>제30조(시·군·구 지적재조사위원회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① ~ ④ (생 략)⑤ 시·군·구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	<p>제30조(시·군·구 지적재조사위원회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① ~ ④ (현행과 같음)⑤ ----- ----- ----- -----.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. (생 략)2. 해당 <u>사업지구</u>의 읍장·면장·동장3. ~ 5. (생 략)⑥ ~ ⑧ (생 략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. (현행과 같음)2. -----<u>지적재조사지구</u>----- -----3. ~ 5. (현행과 같음)⑥ ~ ⑧ (현행과 같음)

